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시각장애인 점·목자 혼용우편물 무료취급 확대 시행

1. 관련

가. 우편법 제26조(무료우편물)

나.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-2014_866(2014. 12. 24.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관련 협조요청)

2. 우편법 제26조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와 공인된 단체·시설 등에서 보내는 녹음물은 무료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3. 우편법 제26조의 입법취지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료우편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점·목자 혼용우편물에 대해서도 무료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확대·시행토록 하겠습니다.

4. 다만,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우편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어 무료우편물 발송인의 자격과 점·목자 혼용 비율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현업 직원들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.

< 점자·목자 혼용우편물 무료취급 기준 >

- (발송인)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각장애인 단체·시설 등으로 한정(우체국에 사전 등록)
- (혼용기준) 목자는 점자를 해석한 것을 전제로 하며, 점자 분량을 넘을 수 없음

5. 시행일 : '16. 1월

붙임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무료취급 확대 방안 1부. 끝.

주무관	장재호	행정사무관	이상수	우편정책과장	박진상	우편사업단장	박종석
본부장	12/17 김기덕						
협조자							

시행 우편정책과-2956 (2015. 12. 17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<http://koreapost.go.kr>
전화 [\(044\)200-8218](tel:044-200-8218) / 전송 (044)200-8391 / wlsghdb@koreapost.go.kr / 비공개(7)